

ACTION 둘, 反성폭력

니가 이러는게 당연해? 내가 침묵하는 게 당연해?

-反성폭력학칙 개정

성균관 대학교의 反성폭력 학칙은 과연 실효성 있는 학칙으로서 제대로 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정답은 NO.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ACTION!미미'선본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反성폭력 학칙-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 개정을 위한 ACTION을 촉구합니다.

▷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일상생활 곳곳에 잠복한 바이러스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할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단순히 그 순간의 괴로움과 수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 침투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자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면 피해 여성에게 다시금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이 모호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질 수 있고, 문제가 축소화 되거나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CTION!미미',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위한 ACTION에 돌입하다 ◁

학내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수년 간 총여학생회는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일방적으로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지요. 그 내규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원칙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규정은 추상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과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심이 듭니다. 가해자 징계 역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징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의 실효성 역시 재고해 보아야 하지요. 'ACTION!미미'선본은 우리학교의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의 문제점을 개선한 반성폭력학칙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 반성폭력 학칙 무엇이 문제인가? ◁

문제 1. '피해자 중심주의' 대원칙 규정 전무

※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 중심주의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경험, 기억, 감정 등을 존중하여 이를 적극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물리적·신체적 증거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구성되는 만큼, 누구의 기억과 진술을 객관적인 사실로 여길 것인가가 늘 논란이 되곤 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구성하는 사건의 맥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건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초래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최소한 피해자 자신으로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반성폭력학칙에는 이러한 대원칙의 규정이 전무합니다. 이에, 액션미미는 성폭력 사건해결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 2.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의 모호성

성폭력에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반성폭력 학칙은, 어떤 것을 '성폭력'으로 정의내리냐에 따라 실제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 학칙에는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행위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는 처벌받아야 해'라고만 말할 뿐, 과연 어떤 것이 범죄인지 명시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때문에 학칙에 어떤 것을 성폭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 3. 학칙 적용대상의 모호성

□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 제 3조(적용범위) 이 내규의 적용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적용규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중 1인만이 우리학교이거나 졸업이나 기타 휴학 등의 상태인 사람에게 적용가능한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학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학내에서는 해소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 4. 피해자 보호규정의 형식성

□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 제 14조(비밀유지의무)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이 14조만이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해자 보호규정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규정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비밀유지의 의무도 몹시 간략하게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함이 전부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한양대학교 학칙과 비교할 경우 그 부실함이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비교) 한양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제 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문제 5. 가해자 징계규정 및 조치규정의 전무

□ 제 11조(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제⑤항 제 2호. 가해자의 행위가 학칙 및 관련 규정의 징계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의뢰.

현재 우리학교 내규에 있는 가해자 징계에 대한 규정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여도 내규에 따라서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피해자 스스로 신고를 기피하고 침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규정이 부실한 것 또한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한양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제 4절 징계 및 조치

제 20조 (조치) 위원회의 심의결과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센터장은 가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3. 금전적 피해보상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

제 21조(징계)

-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 20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가해자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

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문제 6. 재심의 규정의 전무

재심의 규정의 전무는 자칫 피해자보호에만 기울어져 제 2의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재심의 규정을 만들어 무고한 제 2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사건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미비점들과 추상적인 규정이 실제 사건들을 다룸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명시적인 규정의 미비는 상황과 사건의 처리과정에 관여하는 자의 자의에 따라 적용의 유무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낳게 됩니다. 'ACTION!미미'선본은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가 '피해자 중심이라는 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효력을 의심케 하는 비밀유지의 의무와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재규정하고, 앞서 짚은 문제점들을 모두 시정케 할 수 있는 반성폭력의 학칙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ACTION!미미'선본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위한 ACTION을 지지합니다!